

무배당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 상품요약서

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

① 상품의 특이사항

Q : 무배당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?

A : 무배당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산모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산모의 출산부터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공익보험입니다.
- 별도의 조건 없이 체신관서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, 비대면채널 가입을 통해 가입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.
 - ※ 보험기간 중 계약의 해지·무효·취소·철회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 내지 보험료 반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귀속됩니다(주계약 또는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등은 해당금액에서 제외됩니다).
- 10년간 자녀의 희귀질환을 보장하고, 임신 22주 이내 특약에 가입한 경우 산모의 임신질환을 추가 보장합니다.

- 보험금 면책 및 감액기간 없이 가입 즉시 100% 보장하여 드립니다.

② 보험가입 자격요건

■ 가입나이,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, 보험료 납입주기 및 보험가입금액

○ 주계약

가입나이	보험기간	납입기간	납입주기	보험가입금액
태아	10년만기	전기납	연납	1,000만원 (고정)

주) 보험계약자는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 보험계약자로하며,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.

○ 특약

-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

가입나이	보험기간	납입기간	납입주기	보험가입금액
17~45세 (임신 22주 이내 산모)	분만시까지 (최대 10개월)	일시납	일시납	1,000만원 (고정)

주) 1.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를 임신한 모(母)(산모)에 한하며,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가 주계약에 가입하는 경우 이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2.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는 보험기간 10개월을 기준으로 체결하나, 실제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분만시까지(최대 10개월)로 하고, 분만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 이 때, 분만은 출산, 사산, 유산을 포함합니다.

■ 건강진단 여부 : 전건 무진단

◆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

① 상품의 구성

주 계 약	+ (무)임신질환진단특약 2309(선택) (임신 22주 이내 산모) +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(선택)
-------------	---

② 보험금 지급사유

아래 내용은 계약자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주계약 (보험가입금액 1,000만 원 기준)

지급구분	지급사유	지급액
희귀질환 진단보험금	보험기간 중 희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(단, 최초 1회에 한함)	100만원

주)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희귀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,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※ 희귀질환의 정의 및 확인 방법

- "희귀질환"이라 함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한 질환을 말합니다.
- 질병관리청에서 '희귀질환정보' 확인
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(<https://helpline.kdca.go.kr/cddhelp/index.jsp>)
→ 희귀질환정보

■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

(특약보험가입금액 1,000만 원 기준)

지급구분	지급사유	지급액
임신중독증 (자간포함) 진단보험금	보험기간 중 임신중독증(자간포함)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(단, 최초 1회에 한함)	10만원
임신고혈압 진단보험금	보험기간 중 임신고혈압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(단, 최초 1회에 한함)	5만원
임신성당뇨병 진단보험금	보험기간 중 임신성당뇨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(단, 최초 1회에 한함)	3만원

주)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,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■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

대상계약	계약자, 피보험자 및 수익자(사망시 수익자 제외)가 모두 동일한 계약
지정대리청구인 지정	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
지정대리청구인	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
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-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청구하고 수령 -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,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

③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

■ 고지의무(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)

-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질병, 현재의 건강상태,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
-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■ 계약의 무효

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
-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(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·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)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. 다만,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.
- 만 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. 다만,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.

-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. 다만,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,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
■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

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,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.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.

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

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-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
-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-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
■ 계약의 효력

-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
-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.

■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(효력회복)

-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

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.

-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.
-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소정의 연체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.

■ 보험금 등의 청구

-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합니다.
-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비서류 지급사유	신분증	도장	해 당 진단서	비 고
사 망 시	○	○	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망시는 사망진단서,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 ▪ 질병 진단 확정시는 해당 질병 진단서
진 단 시	○	○	○	
해 약 시	○	○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보험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(보험수익자)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용도 : 보험금 대리 수령 용 등)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 ▪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				

◆ 보험료 산출기초

① 예정이율

Q : 예정이율이란 무엇인가요?

A :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, 이 할인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,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. 무배당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의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단위 복리 2.25%입니다.

② 예정위험률

Q : 예정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?

A :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,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.

구 분	0세	5세	10세
희귀질환발생률 (남녀 단일률)	0.002252	0.000328	0.000494

◆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

무배당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는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.

◆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

① 해약환급금 산출기준

Q :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,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?

A : 우체국보험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.

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,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